

2023년

1. 공정거래 자율준수회의: 납품대금연동제 대응방안 협의 (4/6) / CP법제화 등 논의(12/15)
2. 납품대금연동제 설명, 개정 상생협력법 교육 및 질의응답(구매, 4/17)
3. 납품대금연동제 대응 지원(납품대금 연동/미연동 계약서 작성 및 시스템 반영(10월 완료))
4.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 (공정위, 1년간 직권조사 면제 ~ 24/09/30까지)
5. 하도급대금 지급 사전 사후 모니터링 및 검토(연간 26회)
6. 관계법령(공정거래법, 하도급법, 상생협력법 등) 제/개정사항 모니터링 및 분석 검토 후 현업 공유, 필요 시 사규 개정(수시)
7. 관계부처(공정거래위원회, 중소벤처기업부 등) 심의결·지침 및 판례 검토(수시)
8. 윤리규범 준수 여부 상시 모니터링(수시)
9. 법률 검토·자문·지원을 통한 준법 리스크 사전관리(수시)
10. 대표이사 보고
 - 준법 리스크(Legal & Compliance Risk) 관리현황 보고(매주)
 - 준법통제·지원실적 보고(1분기/2분기/3분기/연간: 4회)
11. 이사회 보고 (2/7)
 - 주요 법적위험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준법 Risk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
 - 상시적인 법적위험 관리를 위하여 법률 검토 지원·자문·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
 - 내부감사·내부회계(내부통제)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되고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
 - 공정거래·하도급거래 관련 Risk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
 - 법적위험의 사전적 예방을 위하여 임직원 대상 준법, 윤리교육이 적시에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
12.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 경쟁법 위반사항 0건(2023년 12월 31일 기준)
13. 윤리준법서약서 징구 대상자(중역, 일반직, 기술직 직책자 대상) 100% 서약 달성
14. 임직원 윤리규범 및 준법(법정)교육 수료율 98%달성